당신의 봄

실손의료비 신속지급(선지급) 서비스 신청서

신속지급(선지급) 서비스란?

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, 실제로 의료기관에 입원의료비를 납부하시기 전에 입원 중간까지 발생된 의료비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드리는 서비스이며, 이 서비스를 통하여 선지급 되는 금액은 제출하시는 입원중간진료비 정산서를 통하여 추정되는 예상 보험금의 70% 해당액 입니다.
단, **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.**

신속지급서비스 신청 방법

일반적인 사고접수 과정과 동일하게 사고접수 하시고, 당사가 안내하여 드리는 청구서류와 함께
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
- 의료기관의 입원 중간 진료비 정산서, (중간 정산 기간까지의) 진료비 세부내역서
- 실손의료비 신속지급(선지급)서비스 신청서 (아래의 양식)

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

(아래의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신 후에 □동의란에 V표시하여 주십시오)

• 본인은 입원 중간 진료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료비 신속지급(先지급)을 신청합니다. □ 동의

신청 자격 **※ 해당 항목에 V표**	□ **① 의료급여자 (1종 또는 2종)** □ **② 중증질환자** □ **③ 본인부담금 300만원 이상 발생** ※ 신청자격 중 ② 또는 ③의 경우는 입원하신 병원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※ '중증질환자'는 국민건강보험「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에 의한 중증질환자(암,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중증화상환자)를 의미합니다.
중간 정산 입원기간	**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**
의료기관 정보	**의료기관 명칭 :** _____ (※해당 항목에 V표) □ **상급종합병원** □ **종합병원** □ **병원** □ **의원**

• 본인은 향후 본인이 상기 의료기관 퇴원 시에 실제 납부한 입원의료비에 대하여 귀사가 최종 산정하는 보험금이 선지급된 보험금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그 차액 (선지급 보험금액-최종 산정된 보험금)을 즉시 귀사에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. □ 동의

• 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귀사로부터 지급 받을 여타의 보험금·제지급금에서 귀사가 반환 받을 보험금을 상계함에 동의합니다. □ 동의

20 . . .

작성자: [의 법정대리인] 성명: (서명)

※ 반드시 피보험자가 서명하시고, 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성년후견인제도 대상자인 경우,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中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.